

사업연도	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	사업자등록번호
법인명		

1. 법인세 공제감면세액

①구 분		②근거법조항	코드	③대상세액	④공제세액	
법인세법등	㉑외국납부세액공제	법 제57조 (구법 제24조의3)	01			
	㉒재해손실세액공제	법 제58조 (구법 제25조)	02			
	㉓적정유요초과소득 감면	법 제59조제2항 (구법 시행령 제11조)	06			
	㉔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	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(구법 제24조)	03			
	㉕영농조합법인 감면	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(구법 제52조)	04			
	㉖영어조합법인 감면	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(구법 제52조의2)	07			
	㉗외국인투자기업 감면	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1조	05			
	㉘		08			
	㉙		09			
	㉚소 계		10			
조세특례제한법등	㉛창업중소기업 등 감면	법 제6조 (구법 제6조)	11			
	㉜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	법 제7조 (구법 제7조)	12			
	㉝기술이전소득 감면	법 제12조 (구법 제11조)	13			
	㉞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	법 제21조 (구법 제94조)	23			
	㉟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	법 제34조 (구법 제34조)	14			
	㊱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	법 제63조 (구법 제46조)	16			
	㊲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	법 제64조 (구법 제50조)	17			
	㊳의료취약지역병원시설 감면	법 제65조제1항 (구법 제51조제1항)	18			
	㊴농업회사법인 감면	법 제68조 (구법 제53조)	19			
	㊵기숙사운영사업 감면	법 제95조 (구법 제90조)	22			
	㊶산림개발소득 감면	법 제102조 (구법 제97조)	24			
	㊷산업합리화자산양도 감면	(구법 제35조제1항)	15			
	㊸제주도개발사업 감면	(구법 제54조)	20			
	㊹국공채이자소득 감면	(구법 제82조)	21			
	㊺공장지방이전 감면	(구법 제42조)	25			
	㊻		27			
	㊼		28			
	㊽		29			
	㊾소 계		30			
	㊿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	법 제5조 (구법 제5조)	31			
	①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	법 제10조 (구법 제9조)	32			
	공제	②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	법 제11조 (구법 제10조제1항제1호)	33		
		③기타기술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	법 제11조 (구법 제10조제1항제2호)	34		
		④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	법 제24조 (구법 제25조)	35		
		⑤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	법 제25조 (구법 제26조)	36		
		⑥임시투자세액공제	법 제26조 (구법 제27조)	37		
		⑦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	법 제27조	45		
		⑧지방이전기업투자 세액공제	법 제62조제1항 (구법 제45조제1항)	39		
		⑨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 세액공제	법 제62조제2항 (구법 제45조제2항)	40		
		⑩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	법 제65조제2항 (구법 제51조제2항)	41		
⑪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		법 제94조 (구법 제88조)	42			
⑫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		법 제103조 (구법 제98조)	43			
⑬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투자세액공제		법 제126조	46			
⑭산업합리화시설투자세액공제		(구법 제37조)	38			
⑮			47			
⑯			48			
⑰			49			
⑱			50			
⑲소 계			51			
⑳합 계(㉚+㉛)			52			
공제감면세액합계(㉚+㉛)			53			

작 성 요 령

1. ㉓대상세액란

법인세법·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[별지 제8호서식 부표 1, 2, 3, 4, 5]에 의하여 ㉑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합니다. ㉒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상의 ㉖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.

2. ㉔공제세액란

법인세법·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(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, 2, 3, 4, 5)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(구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)에 의한 공제순위에 따라 ㉑란에 감면구분별로 기입하고, ㉒란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상의 ㉕란중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, ㉔공제세액란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(3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상의 ㉓란중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.

3. ㉑란중 ㉔공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상의 ㉒공제감면세액(ㄴ)란에 옮겨 적고, ㉕란중 ㉔공제세액은 동 서식의 ㉒공제감면세액(ㄱ)란에 옮겨 적습니다.

4.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공제 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개별 기입합니다. 최저한세와 관련없는 것은 ㉒ 내지 ㉓란에 기입합니다.